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0
----------	------

제출일자 : 2025. 2. 4.

제출자 : 정보통신국장



1. 제안이유

- 가. 근거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가. 공인 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 명칭 변경 및 현재 공인 운용 체계에 적합하도록 조항 신설·정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1항)
 - 합의제기관이 청인을 가지는 조항 신설(안 제2조제7항)
 - 합의제기관의 장이 직인을 가질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조제8항)
 - 공인의 신조 개각을 공인의 등록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 공인 미등록 시 사용불가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체)
 - 관수 → 보관, 관수자 → 보관자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12. 6. ~ 12. 26.)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의결기관·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⑧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공인의 신조 개각)”을“(공인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조개각은 정보통신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장이 맡아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를 “등록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중 “공인의 신조개각”을 “공인을 등록·재등록”으로 한다.

제9조 중 “등록, 재등록”을 “등록·재등록”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인을 재등록”을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관수자”를 “보관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보관자”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공인에 의한 인영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공인에 의한 인영으로 본다.

[별표 1]

공 인 의 구 분	규 격	비 고
1. 군수의 공인	2.4cm 정사각형	
2. 보건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3.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4. 읍면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5. 출장소장의 공인	1.8cm 정사각형	
6.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2.0cm 정사각형 ※ 단, 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공인은 1.8cm 정사각형으로 한다.	
7. 인증기 공인		
가. 군수의 공인	2.4cm 정사각형	
나. 보건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다. 읍면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라. 출장소장의 공인	1.8cm 정사각형	
8.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cm 정사각형	

의 신조개각은 정보통신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달성군 본청, 읍·면, 출장소,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통신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제7조(공인대장) 정보통신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이하“공인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달성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① 삭제

--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장이 맡아 처리한다

②-----

----- 등록하고자 -----

-----.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 -----

----- 공인을 등록·재등록 -----

-----.

제9조(공고) -----
----- 등록·재등록 -----

-----.

<삭 제>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3조(공인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 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소속공무원중 업무담당 6급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생략)

③ 공인보관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 -----

-----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공인을 재등록 신청-----.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인보관자) ① -----

----- 보관자-----.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인보관자-----.

제15조(공인의 날인)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공 인 의 구 분	규 격	비 고	공 인 의 구 분	규 격	비 고
1. 군수의 공인	2.4cm 정사각형		1. 군수의 공인	2.4cm 정사각형	
2. 보건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2. 보건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3.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3. 농업기술센터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4. 읍면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4. 읍면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5. 출장소장의 공인	1.8cm 정사각형		5. 출장소장의 공인	1.8cm 정사각형	
6.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2.0cm 정사각형		6.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2.0cm 정사각형	
		*단, 출납원 및 그 본임자의 공인은 1.8cm 정사각형으로 한다.			* 단, 출납원 및 그 본임자의 공인은 1.8cm 정사각형으로 한다.
7. 인증기 공인			7. 인증기 공인		
가. 군수의 공인	2.4cm 정사각형		가. 군수의 공인	2.4cm 정사각형	
나. 보건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나. 보건소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다. 읍면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다. 읍면장의 공인	2.1cm 정사각형	
라. 출장소장의 공인	1.8cm 정사각형		라. 출장소장의 공인	1.8cm 정사각형	
			8.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3.6cm 정사각형	

관 계 법 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관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제36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① 행정기관이 관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관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행정기관에 갱신한 관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행정기관이 관인을 폐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대장에 관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관인을 제39조에 따른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